

정보화 정책평가로서의 분과(sector)별 평가 모형 구상*

정명주^{**}

〈目 次〉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정보화부문 평가 현황
- IV. 문제 제기—정책 평가의 부재 및 정보화분과체계의 유명무실화
- V. 정보화 정책평가의 한 유형으로서의 정보화 분과별 평가 모형 제안
- VI. 결론

〈요 약〉

현재 정보화부문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해 양적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정책의 특성상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와 진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사업평가와 더불어 영역별 분야별 정책평가가 각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행의 정보화부문 평가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평가는 사업평가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정보화정책의 추진체계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분과위원회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책평가로서 정보화추진분과체계를 활용한 정보화 분과별 정책평가 모형을 제안하였다.

먼저 정보화분과별 평가의 개념과 목적을 정의하고, 시행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 정비차원에서 평가과정에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가 분과별 평가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결과의 활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보화기본계획과 시행계획간의 연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분과별 계획체계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평가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절차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새로운 평가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방법론 개발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방대하고 정밀한 분석을 요하는 독립된 연구영역이라 보고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제안하는 데 한정하였다.

【주제어: 정보화정책, 정보화정책평가, 정보화평가, 정보화분과】

* 본 연구는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mjch@pnu.kr).

I. 서 론

최근 우리나라 정보화정책에 대한 추진체계인 정보화추진위원회체계가 2006년 8월 개편되었다. 개편의 기본 방향은 종전의 거의 부처 구분에 따른 25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체계를 유사기능을 고려해 분야별로 통합·조정하여 10개 분과위원회 체계로 개편하여 분과 차원에서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정보화추진위원회, 2006).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된 취지는, 정보화사업은 모든 부처가 시행하고 그에 따라 개별 부처별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사업간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기관간 정보공동활용이나 시스템 상호운용성 측면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집단별로 분과를 형성하여 분과별로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체계에 따라 정보화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은 각 개별 부처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종합조정을 거친 후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하여 각 부처별로 사업을 집행한다.

한편,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2007년 현재 정보화부문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평가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체계로 통합되어, 각 개별 부처별로 개별 정보화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가 평가총괄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행되고 있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시행령). 2007년도에 시행된 정보화 부문 자체평가의 대상은 “정책추진과 관련된 정보화 사업 및 정보화수준으로서 사업의 경우 모든 정보화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며 공통지표를 통해 평가”하도록 하였다(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7). 그 공통지표의 내용은 ‘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성과달성도, 평가결과의 활용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행 평가는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총괄평가라 할 수 있다.¹⁾

정보화정책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흔히 교육정보화정책, 문화정보화정책 등 분야별로 정보화정책을 구분하기도 하고, 정보 보안정책, 정보인프라 정책, 정보산업정책 등 정보화를 구성하는 계층(layer)별로 정

1)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수준에 대한 평가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지표가 적용되어 평가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업평가 대 정책평가는 관점에서 접근함에 따라 수준에 대한 평가 내용은 제외하기로 한다. 그리고 현행의 사업평가가 평가내용상 일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대한 집행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있으나(정경길 외(2004)의 좁은 의미의 과정평가에 해당) 주로 집행 후 목표달성도(가중치가 가장 높음)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총괄평가의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보화정책을 구분할 수도 있다.

현행의 정보화 평가는 정보화정책을 어떤 관점으로 보든 교육정보화정책, 정보인프라정책 등 정책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 프로그램으로서의 학교 PC보급 사업, 정보화마을사업 등 특정 분야의 정책에 속해있는 개별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책학에서 사업과 정책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학자들에 따라 양분되고 있는데 김명수(1998), 노화준(2006), 유훈(2002)의 경우는 구분하지 않는 관점에 가깝고, 정정길 외(2004)는 구분하는 관점에 가깝다. 어떤 관점이든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나 연구자의 입장은 사업과 정책은 다르다는 관점에서 사업평가와 정책평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현행의 정보화 평가는 사업평가에 한정되어 있어 정책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하고 있고, 정보화추진체계로서의 분과체계의 활용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보화 정책 평가를 시행하되 분과체계의 기능 정상화 차원에서 분과별 정책평가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사업평가와 정책평가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종합하면서 사업평가와는 다른 정책평가의 관점과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책 평가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화 부문에 있어서의 정책을 보는 관점과 영역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분과의 위치를 가늠하고 정보화분과의 개념과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기능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따라 현행의 정보화 평가 운영을 분석하고 정책평가의 필요성과 분과체계의 활성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따라 정보화 분야에서의 정책평가의 가능성을 분과별 평가에서 탐색하고 이를 위한 제반 평가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분과별 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서도 독립적인 연구주제라 할 만큼 방대한 내용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시론적으로 탐색적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사업평가와 정책평가

정책학에서 사업평가와 정책평가는 혼용되고 있다. 한 가지 관점은 사실에 있어서는 두 용어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김명수, 1998: 28-42). 이유는 “실제로 평가되는 것은 집행기관이 정책을 구체화시켜 수행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특정한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대한 개별적인 평

가를 통하여 특정한 정책이 평가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업평가와 정책평가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실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매우 현실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경우에도 “특정한 정책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통하여 특정한 정책을 평가하는 경우 개별적인 평가의 결과를 어떻게 종합하여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평가(혹은 평가의 종합)로 일부 설명할 수 있으나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의 종합으로 전체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사업평가와는 다른 차원의 정책평가의 개념 및 방법에 대한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화준(2006)의 경우는 사업과 정책 간에 혹은 사업평가와 정책평가간의 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부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주요 이슈들²⁾을 Rossi, Mark, Lipsey & Freeman(2004)을 인용하면서 제시하고 정책평가는 바로 이러한 이슈들에 답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이슈들에서 정책이라는 용어와 프로그램이라는 용어가 혼재되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정책평가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program)이 그의 산출결과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측정과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개별적이며 체계적인 연구의 형태를 뜻한다는 것이다(노화준, 2006: 4). 그리고 정책평가와 관련된 논의의 전체에 걸쳐 정책과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뚜렷한 구분 없이 혼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사업과 정책간에 분명한 구분을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정책이 언급되는 경우와 사업(program)이 언급되는 부분에 있어 개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차별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정길 외(2004)는 사업은 집행을 위하여 구체화된 정책수단인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사업과 하위수준의 정책과는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책목표-수단 트리의 상층부로 가면 사업과 정책 간에는 뚜렷이 구분되므로 정책과 사업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평가와 정책평가가 서로 혼용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는 정책 평가론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과 사업 평가론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이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정정길 외, 2004: 10-11) 이는 김명수(1998)의 현실적 관점과 일치하는 견해이다. 둘째는 사업평가의 방법과 정책평가의 방법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정책평가에서 심리학자, 사회심리

2) 제시된 이슈들의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실현된다면 그 정책이 추구하는 이념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갈등들을 정당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그 정책은 의미 있는 것인가?’, ‘정부간여는 잘 집행되고 있는가? 의도한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는가?’, ‘프로그램의 비용은 달성한 효과나 편익에 비추어볼 때 합리적인 것인가?’ 등이다.(노화준, 2006: 3-4)

학자, 교육학자들이 사업의 평가를 위해서 개발시킨 논리나 기법을 그대로 도입하여 정부사업이나 정책을 평가하려고 한다고 본다. 실험적 방법이나 준실험설계에서의 통계적 논리를 강조하는 것 등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정정길 외, 2004: 10-11).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사업과 정책간에는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닌 만큼 사업평가와 정책평가는 구분되어야 하고 사업평가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평가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김명수(1998)가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의 종합만으로 전체 정책에 대한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별도의 방법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맥락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화부문에 있어서의 평가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보면 정보화사업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내용상으로도 사업평가를 다루고 있는 연구와(양재진·정명주·정진우, 2003;이윤식·김영미·김현성·정명주, 2000;정명주, 2000a;명승환, 2002;김순은·윤상오, 2001;장원석·이은정, 2005), ‘정보화평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실상 내용은 사업평가를 다루고 있고 정책평가와는 구분하지 않는 연구(이윤식, 2000;정명주, 1999)도 있으며, ‘정보화 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사실상 내용은 정책과 사업에 대한 구분 없이 이루어진 연구(정명주, 2000b) 등이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보화부문에 있어서의 사업평가 혹은 정책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은 사업과 정책간에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이들 연구가 대부분의 사례연구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사업평가는 김명수(1998)의 주장이 상당부분 설득력을 갖게 하는 점이다.

그러나 정보화정책은 기술발전 및 수요 추이에 따른 지속적인 변화를 전제로 함으로써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의 수정이나 재해석 뿐 아니라 집행결과에 따른 오류의 시정을 통해 정책의 재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오광석, 2006: 43) 사업별 평가는 충분한 평가접근방법이라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노유진·안문석(2004)의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정책과제평가에 대한 분석결과 매우 방대하고도 의미 있는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평가의 활용측면에서 정책과정 사이클에 비추어볼 때 평가결과는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사업평가에 국한된 평가결과는 해당사업이나 과제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개선 조치사항들이 산출되어 나오므로 정책과정 사이클에 따른 평가결과 활용은 사업평가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사업평가결과 조치사항의 성격이 대부분 활동과 수단에 대한 내용에 그치고 있고 정책목적과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과 같은 내용은 부재하여 활용의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행 사업평가는 평가대상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대상사업수가 많은데다가 평가가 단기간에 이루어짐으로써 평가의 심도를 낮게 하고 사회과학방법들을 활용한 효과평가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현행 기관에서는 주로 사업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이러한 사업평가가 갖는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정책평가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책학습이론에 있어서도 정책평가와 관련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May(1992)는 정책학습을 수단적 정책학습(instrumental policy learning)과 사회적 정책학습(social policy learn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단적 정책학습은 정책수단이나 정책집행디자인에 관한 학습이고 사회적 정책학습은 정책목표나 정책의 기본적인 문제에 관한 학습으로 볼 수 있다(유훈, 2006: 98). 이에 따르면 사업평가를 통해서는 수단적 정책학습이 주로 일어나고 사회적 정책학습은 정책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의 목적이 학습에 있다고 할 때(노화준, 2006: 20) 넓은 의미의 정책학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적 정책학습과 더불어 사회적 정책학습도 일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2. 정보화정책의 영역 설정 및 정책유형별 평가의 의미

정책평가로서의 분과별 평가 모형을 제안하기에 앞서 먼저 정보화분야에서의 정책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한 후 정보화정책을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분과의 위치와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정보화정책 영역 설정

정보화정책은 정보화를 그 핵심내용으로 함으로써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과 외연의 확대, 그리고 다양성으로 인해 그 정책기조 및 적용 대상, 적용 범위 등에 있어 매우 유동적인 성격을 갖는다(김성태, 2004: 79). 따라서 정보화정책이라는 용어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정책에 대한 관련 학자들간에 온전히 일치되는 관점을 정립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정보화정책은 정보화와 관련된 정부관여의 일체의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개념정의는 정보화정책의 영역을 설정하고 유형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정책의 유형화에 유용한 개념정의의 예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성태(2004)는 국내외 학자들의 개념들을 종합 분석하여 정리하면서, 정보화

정책을 ‘협의로는 통합적 정보전송기반의 완성과 보편적 정보이용기반의 실현, 즉 정보공급 기반요인과 정보수요 기반 요인의 확충 및 고도화로 이해하는 통신정책적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고, 광의로는 국가경제를 유지, 발전시키면서 경제성장과 신규고용을 창출해내는 산업 경제적 측면과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된 사회문제 해결의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 정책적 측면 등과 연계된 국가발전의 종합정책’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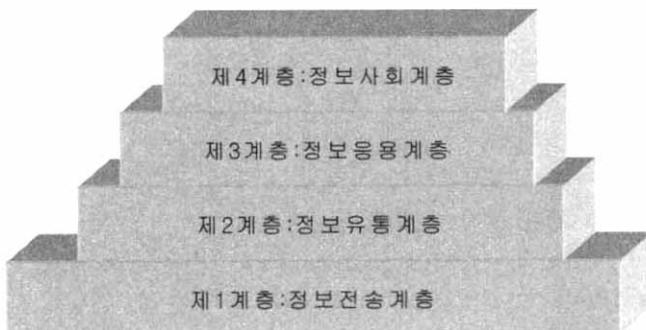
오광석(2005)은 정보기술 자체의 도입 및 확산에 주목한 좁은 의미의 정보화 정책과 정보기술의 도입 및 확산과 연관된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고려한 보다 넓은 의미의 정보화 정책으로 구분하면서 좁은 의미의 정보화정책은 정보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간과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광범위한 사회 변화를 포괄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정보화 정책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이에 따라 그는 정보화정책을 ‘정보를 중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인식하여 정보산업뿐만 아니라 좁은 의미의 정보화정책에 사회, 조직 및 개인적 측면을 포함한 정보사회로의 변화와 관련된 전략과 방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한세억(2000)은 정보화정책을 ‘정보의 계획, 창출, 생산, 수집, 배분, 확산과 처리를 포함하는 정보의 활동주기(life cycle)를 움직이고 관리하는 일련의 법률(laws), 규제(regulations), 명령(directives), 지침(statements), 사법적 해석(judicial interpretations)’으로 보거나(Hernon, 1989: 229) ‘정보의 처리와 저장이라는 정보생성사슬(information production chain)에 따라 정보창출로부터 파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단계(stage)와 관련된 정책’으로 정의하는 것(Braman, 1995: 4)은 정책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보고 사회내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을 간과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보화정책의 범주를 최협의, 협의, 광의, 최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를 구분에 따라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가 변화해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최협의 수준에서는 통신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게 되고, 협의 수준에서는 컴퓨터와 통신과 소프트웨어의 결합이 일어나며, 광의의 수준에서는 컴퓨터, 통신, 소프트웨어 그리고 컨텐츠의 결합이 일어난다고 본다. 그리고 마지막 최광의의 수준에서는 이를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정책 영역이 구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 그는 정보화정책에 대한 광의의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정보사회의 핵심을 정보통신기반구축으로 보고 정보화정책이란 ‘정부가 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정된 정보전송, 정보유통, 정보응용, 정보제도 등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촉진적 및 규제적 계획 및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세억(2000)이 정보화의 핵심요소로 파악한 정보통신기반구조는 정보통신

부문의 종합적인 기반 구조로서 세계화시대 각 국들이 자국의 이익에 맞게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보통신기반구조(KII:Korea Information Infrastructure)는 하드웨어적인 것과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그림과 같이 네 가지로 계층화시킬 수 있다.

〈그림 1〉 정보통신기반구조



자료: 한국전산원(1996)

제1계층은 광케이블망, 위성통신망 등 정보가 실질적으로 전송될 하부구조의 구축을 포함한 통신기술이다. 제2계층은 정보의 가공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통신망내에 들어온 정보를 제작, 가공하여 서비스를 생성하거나 사용자에게 전달해 주는 데 필요한 기술이 요구된다. 제3계층은 응용서비스, DB구축 등을 통해 문화의 정보화와 지식의 창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제4계층은 정보통신기반구조 구축사업의 최종목표로서 법/제도, 관습/가치관 등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정보사회가 형성되는 계층이다(한국전산원, 1996: 3-4).

이러한 계층모형(layer model)은 정보 및 정보화의 특성을 고려한 매우 유용한 개념틀을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는데 Yochai Benkler(2000)도 소비자와 생산자간 의사소통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면서 물리적 계층(physical layer), 논리적 계층(logical layer), 컨텐츠 계층(content layer)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러한 계층 구분을 이용하여 정립한 법적 규제체계를 ‘계층 모델(layer model)’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계층 모델은 일반적인 의사소통 시스템의 레이어 구분인 OSI 7 레이어 모델³⁾과 Tim Berners-Lee(1999)의 전송, 컴퓨터, 소프트웨어, 컨텐츠 레이어의 4단계 레이어 모델을 규범적 분석을 위해 단순화시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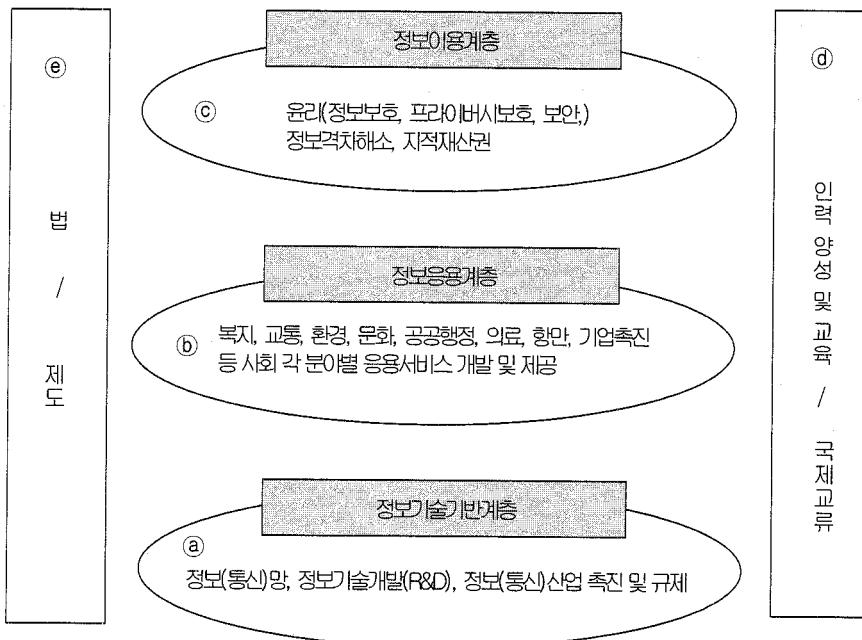
3) OSI는 1977년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서 통신 분야 표준화 추진을 위해 만든 개방형 시스템모델로 application layer, presentation layer, session layer, transport layer, network layer, data link layer, 물리적 레이어의 7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다(정필운, 2005: 196-197).

것이다(정필운, 2005: 195).

이러한 계층 모델은 한세익(2000)i) 핵심요소로 파악한 우리의 정보통신기반 구조와 매우 유사한 개념적 틀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오광석(2005)의 좁은 의미의 정보화 정책개념 범주와 김성태(2004)의 통합적 정보전송기반과 보편적 정보이용기반의 개념은 정보통신기반구조에서의 전송, 유통, 응용 계층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넓은 의미의 정보화정책의 범주는 정보통신기반구조의 정보사회계층과 매우 흡사한 개념적 실체를 갖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정책의 영역을 이러한 계층 모델 혹은 정보통신기반구조의 개념에 입각하여 설정하고자 한다. 먼저 계층은 크게 3개 층으로 구분하여 각각 정보기술기반계층, 정보응용계층, 정보이용계층으로 설정한다. 정보기술기반계층은 정보통신기반구조의 정보전송계층과 유통계층을 통합하여 정보기술과 관련된 기반구조로 파악하고 여기에는 정보(통신)망정책, 정보기술정책, 정보(통신)산업정책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계층은 정보응용계층으로서 사회 각 분야별로 정보응용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제반 정책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복지정보화정책, 환경정보화정책, 전자정부정책, 문화정보화정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 계층은 정보이용이 확산되면서 이용으로 인한 각종 정보사회적 현상들과 관련된 정보이용계층이다. 여기에는 정보윤리적 차원에서 정보보호정책, 프라이버시보호정책, 정보보안정책, 정보격차해소 정책, 지적재산권정책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어떠한 특정 계층에 포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면서 이들 국가 정보사회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정보화관련 법, 제도적 측면과 사회 인프라로서의 인력양성 및 교육 정책과 최근 정부부문에서 강화되고 있는 정보기술 관련 국제교류정책 등을 특정 계층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계층 모두에 적용되는 개념으로 보고 다음 <그림 2>와 같이 정보화정책의 영역을 설정하고자 한다.

〈그림 2〉 정보화정책의 영역



2) 정책유형과 몇몇 평가 질문

정책평가를 하는 데 있어 평가질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평가질문 혹은 이슈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의 접근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노화준, 2006: 111-112). 여기서는 정보화정책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출 때 어떠한 유형의 평가방법 혹은 어떠한 접근방법의 평가가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우선 몇 가지 정보화정책평가관련 질문들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인가?(가장 거시적인 수준의 질문)
- ② 인프라는 어느 정도이고 실제 응용과 활용은 어느 정도인가?
- ③ 보안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
- ④ 정보화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적시에 원활하게 마련되어 정보화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 ⑤ 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며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⑥ 계층간, 연령간, 지역간 전반적인 정보능력격차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가? 혹은 그 격차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가? 더 커지고 있는가?
- ⑦ 정보통신산업이 전체산업연관효과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 ⑧ 우리나라 SW산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⑨ 우리나라 IT 서비스산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⑩ 공공분야에서의 정보화수준과 민간부문에서의 정보화 수준을 비교하면 어떠한가?
- ⑪ 우리나라 기업체들의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 ⑫ 산업분야별로 정보화 수준은 어떠한가?
- ⑬ 교육, 문화, 복지, 의료, 환경, 안전, 외교, 국방 분야의 정보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이 질문에 있어서는 다시 보다 세분하여 질문이 가능. 예컨대 대학의 정보화수준과 중등학교의 정보화수준의 차이는? 대학간 차이는? 혹은 문화컨텐츠와 유통분야에 있어서 정보화 수준은? 등등) 각 각의 분야별로 차이가 큰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각 각의 분야별로 균형적 발전 전략이 타당한가? 분야별 국가경쟁력 기여도나 삶의 질 측면에서 기여도가 높은 분야를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타당한가?
- ⑭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버교육시스템 개발사업계획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치는 적정한가?
- ⑮ 국가지식관리체제 구축 사업은 위험, 변경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⑯ 한국 역사정보화사업은 성과계획 대비 목표 성과는 달성했는가?
- ⑰ 인적자원 통계정보체제 구축사업의 전년도 평가결과를 이후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이 곧 정보화평가과정이다. 그러나 각 질문들은 그 수준이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평가의 대상 단위가 모두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들은 다시 그 수준별로,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질문, 정보화정책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질문, 국가사회정보화수준을 대상으로 평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질문 등으로 구분해서 고찰할 수 있다.

먼저 위의 정책질문들 중 ⑭, ⑮, ⑯, ⑰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개별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위의 <그림 2>에서 제시한 정보화정책의 영역에서 Ⓐ, Ⓑ, Ⓒ, Ⓓ, Ⓔ 각 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가장 거시적인 수준의 정책질문인 질문 ①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국가사회 정보화 수준에 대한 측정 및 평가를 통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보화에 대한 평가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정보화정책에 대한 평가, 국가사회 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로 대별된다 하겠다.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

는 현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보화정책에 대한 평가 중 정보기술기반계층과 정보이용계층에 해당하는 정책에 대한 평가는 현재 이들 주제와 관련되는 각 기관 등(정보보호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협회, 소프트웨어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동향파악 및 전망보고서나 분석보고서를 통해서 파악되고 있고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평가’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정책에 대한 평가 중 정보응용계층에 포함되는 각 정책별 평가는 사회 각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현황 및 수준을 진단하는 것으로서 정치(정부), 경제, 사회, 문화, 개인 차원에서의 정보화 수준을 진단하거나(‘U-Korea 기본계획’ 구성 체계⁴⁾에 따라), 정부, 경제산업, 교육문화, 사회복지, 국가안전, 입·사법 분야등으로 구분하여(정보화분과위원회 체계에 따라) 진단 평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진단 및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거시적 수준의 국가사회 정보화수준에 대한 평가는 한 나라의 정보화수준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평가로서 국가정보화지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각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하는 정보화 지수 혹은 우리나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표하는 국가정보화지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⁵⁾

3. 정보화분과의 의의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기능

정보화부문에 있어서의 분과의 의미 및 이를 기본 단위로 하는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보화 추진체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정보화추진체계에 포함되는 공식적인 조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2006년 8월에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보화추진체계 개편방안(안)’에서 확정된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이의 근거가 되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제반 정보화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심의기구로서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8조에 의거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있

4) ‘U-코리아 기본계획’의 구성체계에 대해서는 뒤의 현황 부분에서 상술하였다.

5) 국제정보화지수에 있어서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의 ‘digital access index’, WEF(World Economic Forum)에서의 ‘network readiness index’, IDC (International Data Group)에서의 ‘information society index’, UN(United Nations)의 ‘e-government readiness index’ 등 많은 측정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매년 국가정보화지수를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전산원(2004a)을 참고.

다. 그리고 정보화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6조). 그리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각 분과의 위원장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데 현재는 차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소관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관련기관 실·국장급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기능은 소관분야와 관련하여 시행계획, 정보화 추진실적평가,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 정보 공동활용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제7조).

2006년 개편된 분과위원회는 전자정부, 경제산업, 교육문화, 사회복지, 국가안보, 형사법제, IT인프라, 정보보안, 입법, 사법 분과등 총 10개의 분과로 구성되었다(정보화추진위원회, 2006). 종전의 분과위원회는 거의 부처 구분에 따른 분류 형태를 띠게 됨으로써 25개 분과가 난립하여 계획수립 등에 있어 분과위원회를 활용한 실질적인 상호 협의가 불가능하고(한국전산원, 2004a: 11), 다수 부처 연관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 역할 수행 등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정보화추진위원회, 2006). 이에 따라 이번 개편시 분과의 유사기능을 고려해 유사 분야간 상호연계성, 국가재정운영계획, 책임장관제 등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통합, 조정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각 분과가 관련되는 분야와 분과별 주관기관 및 관련기관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각 분과별 관련분야 및 관련기관

분과 구분	관련 분야	관련 기관
전자정부 분과 (주관기관 : 행자부)	-전자정부과제 및 공통행정(전자민원, 행정정보 공유 등) -행자부 소관 및 지방자치분야	행자부, 감사원, 인사위, 국가청렴위, 정통부, 흥보처, 보훈처, 고충위, 중앙선관위, 법제처 등
경제산업 분과 (주관기관 : 재경부)	-재정, 금융 분야 -산업, 농림, 건교(SOC) 분야 -해양수산, 과학기술 분야	재경부, 기획처, 국세·관세·조달·통계·특허청, 공정위, 금감위, 산자부, 농림부, 산림청, 건교부, 해수부, 과기부, 행자부, 정통부, 기상청, 한국은행 등
교육문화 분과 (주관기관 : 교육부)	-교육인적, 산업인력, 문화 등	교육부, 재경부, 과기부, 문광부, 산자부, 행자부, 정통부,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기획처, 인사위, 흥보처 등

(다음 쪽에 계속)

분과 구분	관련 분야	관련 기관
사회복지 분과 (주관기관 : 복지부)	-보건복지, 환경, 여성, 안전관리 분야	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행자부, 정통부, 환경부, 청소년위, 방재청 등
국가안보 분과 (주관기관 : 국정원)	-안보, 공안, 통일, 외교, 국방 분야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비기위, 법무부, 행자부, 정통부, 검찰·경찰, 관세청 등
형사법제 분과 (주관기관 : 법무부)	-형사, 법무, 법령·법제 분야	법무부, 법제처, 대검찰청, 경찰청, 행자부, 정통부 등
IT인프라 분과 (주관기관 : 정통부)	-BcN, RFID 등 공통인프라 -IT 이용촉진 및 활성화 -정보윤리, 정보프라이버시 등	정통부, 건교부, 복지부, 행자부, 산자부, 해수부 등
정보보안 분과 (주관기관 : 국정원)	-정보보안 -사이버 침해 대응 등	국정원, 국방부, 행자부, 정통부 등
입법 분과 (주관기관 : 국회사무처)	-입법, 국회도서관 분야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등
사법 분과 (주관기관 : 법원행정처)	-사법 분야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등

자료: 정보화추진위원회(2006)

따라서 앞으로는 개편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간 중복, 상호연계성, 보안 등에 대해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분야별 쟁점과제 및 공동수행과제 발굴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 역할수행이 요청되고 있다(정보화추진위원회, 2006).

III 정보화부문 평가 현황

1. 정보화 계획 체계 및 계획 수립 과정

정보화평가과정을 개관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정보화에 대한 계획의 체계와 내용 및 그 수립과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평가의 대상이 모두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계획이 어떤 과정에 따라 수립되는지를 고찰함으로써 평가과정과의 연계체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정보화에 관한 계획은 크게 2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이고 또 하나는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이다. 먼저 기본계획은 5년의 기간을 단위로 하는 계획으로서(정보화촉진기본법 제5조), 1996년 제1차 기본계획으로서의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07년 현재까지 총 5회에 걸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⁶⁾ 현재는 'U-Korea 기본계획'이 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이다. 'U-Korea 기본계획'의 내용은 정보화 추진영역을 5대 분야와 4대 엔진으로 분류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정보화 추진을 통한 U-Korea의 비전 달성이 핵심내용이다. 대략의 내용과 구성 체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U-Korea 기본계획'의 구성과 내용

5대 분야	전략	세부실천과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부구현 (Government)	실시간·지능형 행정체계구축 등 4개 전략	실시간 정부업무 관리 및 성과 평가 실시 등 13개 과제
첨단 지능형 국토 건설 (Land)	지능형 첨단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 편리한 교통환경 구현 등 6개 전략	도로자원 지능화를 통한 첨단도로시스템 구축 등 17개 과제
경제활력 및 성장 잠재력 제고(Economy)	U-금융체계 도입으로 간편, 투명한 금융거래체계 구축 등 4개 전략	U-Payment 환경 조성 및 활성화 등 12개 과제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 실현 (Social environment)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체계 구축 등 5개 전략	실시간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16개 과제
편리하고 윤택한 개인생활 지원(Life services)	교육시설 및 서비스의 지능화로 맞춤형 교육 실현 등 4개 전략	학습자 수준 및 유형에 따른 모바일 기반의 교육 컨텐츠 개발 등 12개 과제
4대 엔진	전략	세부실천과제
U-세계화 엔진 (Global Leadership)	해외시장진출 등 3개 전략	U-IT 등 IT 신산업의 세계시장 개척 등 10개 과제
U-산업 엔진 (Industrial Infrastructure)	U-핵심전략산업 육성 등 4개 전략	공유 기반 및 지원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 9개 과제
U-사회제도 엔진 (Social Infrastructure)	U-서비스 기회 확대 등 4개 전략	전국민 U-라이프 촉진을 위한 수요 창출 등 11개 과제
U-기술 엔진 (Technology)	U-네트워크 구축 등 4개 전략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고도화, 지능화 등 14개 과제

6) 1996년에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1999년에 'Cyber Korea 21', 2002년에 'e-Korea Vision 2006', 2003년에 'IT Korea Vision 2007', 2006년에 'U Korea 기본계획'이 각각 수립되었다.

다음 시행계획은 이러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계획이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있다(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3조). 2007년도 시행계획은 분과위가 개편되기 전에 수립된 내용으로서 25개 시행계획이 존재하는데,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성하는 단위는 정보화사업에 해당된다. 2007년도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예를 보면, 먼저 교육정보화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사업추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사업별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2007년도에는 e-교수학습지원체계 구축 등 8개 대과제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다시 세부 과제로 분류하여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계 구축 등 총 20개 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을 보면, 정보통신부에서 각 부처별 계획⁷⁾을 종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하면 정보화추진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확정한다. 그리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수립된 부처별 시행계획을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10개 분과위에서 수합하고 검토·조정하게 된다. 이는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검토·심의 과정을 거쳐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확정된다.

2. 정보화 평가 현황

정보화 평가에 대해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적용되어 시행된 2007년도를 기준으로 평가절차, 평가대상 및 평가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1) 평가 절차

2006년도에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2007년부터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과정에 변화가 초래되었다. 정보화부문과 관련된 변화의 요체는 정부업무평가에로의 통합이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

이에 따라 2007년 현재 시행중인 정부업무평가 정보화부문 평가 절차를 보면 국무총리가 정부업무 전반에 관한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 확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국무총리가 2007년 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였다. 그리고 평가시행계획에 따라 부처별로 정보화사업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여

7) 여기서 각 부처별 계획이라 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의견과 계획을 먼저 수합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때 부처로부터 제출받는 임시적인 계획을 일컫는 것으로서 시행계획과는 다른 것이다.

사업별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사업별 평가결과가 산출되어 나온다. 이를 부처별 자체정보화평가결과를 정보화평가 총괄기관인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에서 확인 점검한 후 최종적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하게 된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시행령).

2) 평가 대상 및 평가 기준

2007년도에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정보화부문 평가대상은 정보화사업과 정보화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정보화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은 모든 정보화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도록 하였다.⁹⁾ 정보화촉진시행계획상의 사업을 놓고 볼 때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라도 부처 자체의 필요에 따라 평가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평가대상은 정보화촉진시행계획상에 포함된 정보화사업의 단위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평가기준은 국무조정실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자체평가지침을 통해 지정함으로써(지정지표)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공통지표).

그리고 결과를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계량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표별로 배점이 주어진다. 그리고 사업별로는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가대상사업의 예산과 평가대상사업 총예산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획득점수, 사업별 지표점수, 지표별 점수 등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통지표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점은 다음 <표 3>과 같다.

8)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정책평가적 관점에서 접근하므로 정보화수준평가에 대한 논의는 제외한다.

9)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가 1억원 미만인 사업, 당해연도 사업비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사업 중 간접비적 성격을 갖는 사업, 단순 장비임차료등과 같이 전년도에 시작되어 평가시점까지 동일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실적에 대해 평가를 받은 경우 금년도 실적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하는 등의 기준이 설정되었다(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07).

<표 3> 2007년 정부업무평가 정보화부문 사업평가 공통지표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적용단위
계획의 적절성(20)	사업목적 및 추진근거의 명확성	4	사업
	사업간 연계성·종복성	3	사업
	사업추진 방식의 적절성	3	사업
	성과계획의 적절성	10	사업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10)	계획 준수성	5	사업
	위험·변경관리의 적절성	5	사업
성과달성을(25)	성과목표의 달성을	25	사업
평가결과의 활용성(5)	평가결과의 활용성	4	사업
	평가결과의 대외 공개	1	사업

자료: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2007)

IV 문제 제기-정책 평가의 부재 및 정보화분과체계의 유명무실화

1. 정책평가의 부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보화부문에서의 평가는 사업을 단위로 하고 체크리스트에 의한 목적달성평가모형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서 제시한 정보화정책 영역별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보화사업평가 결과 해당 사업이나 과제에만 적용될 수 있는 개선 조치사항들이 산출되어 나오는 데 그치고 있고, 거시적 관점에서의 정책 목적의 재설정 및 새로운 정책개발과 같은 정책재형성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의 단순취합만으로는 국가사회 정보화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나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 전체 정보화의 성과는 개별 기관의 개별 사업의 성공 수준에 의해서만 진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의 진단 및 평가(종합적인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다양한 관점에서의 진단과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국가사회 정보화의 현 위치와 수준을 가늠하도록 해야 한다.

2. 정보화추진분과체계의 기능 표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보화 기획과정에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체계에 따라 각 개별 부처·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정보화추진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정보

화추진위원회 체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나, 정보화평가과정에서는 정부 업무평가 절차에 따라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차원에서의 평가 관련사항에 대한 조정이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평가과정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보화추진 분과위원회위원회차원에서의 평가관련사항에 대한 조정이나 심의 절차는 부재인 상태에서 부처별 단위사업별 평가만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결과가 바로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확정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짐으로써 정보화기본계획 수립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바로 기본계획수립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는 문제도 있다. 현행의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계획의 적정성이나 추진 과정에서의 원활성 혹은 개별 사업의 목표 달성을 초점으로써 그 평 가결과는 개별 사업의 계획이나 추진과정 혹은 목표달성을 개선하는 데 활용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정정길 외(2004)의 확장계획 개념)의 구성과 내용은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 등으로 구성되는 성격을 가짐으로써 현재의 정보화기본 계획(U-코리아 기본계획)은 중장기계획으로서 중장기 정보화 추진방향 및 미션을 제시하고 중범위 수준에서의 사회 각 분야별로 정보화 추진전략 및 주요 핵심과제들을 제안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만으로는 바로 기본계획수립에 활용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기 위해서는 사업별 평가의 단순 종합을 넘어 분과 차원에서의 진단 및 방향제시가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지금까지 정보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 간의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대안을 개발하는 등의 원칙적인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부처로부터의 계획들을 별도로 제출받아 수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볼 수 있다.¹⁰⁾

10) 정정길 외(2004)는 일반적으로 포괄적 계획과정은 준비 단계, 욕구 추정 단계, 정책 개발 단계, 사업·프로그램 개발 단계, 실천 단계, 점검 및 평가 단계를 거쳐 수립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점검 및 평가단계에서는 개별 사업활동과 궁극적인 정책목적 사이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조사,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대한 기본 자료를 획득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포괄적 계획(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행의 정보화평가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만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궁극적 정책목적을 식별하고 둘 간의 관계를 점검하는 등의 정책평가가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정보화에 대한 종합계획으로서의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정책평가에 대한 결과가 활용될 여지가 없게 되고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는 계획수립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등의 폐해가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V 정보화 정책평가의 한 유형으로서의 정보화 분과별 평가 모형 제안

사업평가와 정책평가는 다르다는 관점에서 현행의 정보화부문에서의 평가가 갖는 사업평가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평가의 가능성과 현행의 정보화분과위원회체계의 기능 정상화 방안 차원에서 본 장에서는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체계에 따른 분과별 평가에 대한 시행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정보화분과별 정책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현행의 정보화 평가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평가의 기반요소라 할 수 있는 평가절차의 정립, 분과위원회 기능의 정상화, 분과별 평가의 기준으로서의 분과별 계획수립, 그리고 새로운 분과별 평가에 적용할 방법론 개발 등이 정비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정보화분과별 평가의 개념, 목적 그리고 활용

위(<그림2>)에서 살펴본 정보화정책의 영역 중 정보응용계층에 해당되는 사회 각 분야별 정보화정책으로서 현재의 분과위원회체계에 따른 각 분과별로 평가하는 방법이 정보화분과별 평가이다.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설치의 당초 취지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 이에 따라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는 정보화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하도록 하였다(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7조).

이후 최근 IT기술의 적용범위가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정보화에 대한 관련 부처들의 관심이 제고되면서 부처별, 분야별로 정보화가 추진되면서 국가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중복투자방지와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종합,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종전의 부처별 구분방식의 분과위원회를 통합 개편하여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실질적인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정보화추진위원회, 2007). 즉 정보화사업의 특성상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분과를 구성하고, 정보화사업 추진 및 평가시 해당 분과 내에서 관련사항에 대한 조정 및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분과의 설치 취지에 따라 분과별 정책평가의 목적은 정보화 평가와 관련하여 예시한 몇 가지 정책질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분야별로 정보화 추진을 점검하여 문제점이나 장애 요인 등을 도출하여 정책개선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 비교, 분야별 추진 진도 비교점검 등 분야별 정보화수준에 대한 비교를 통해 국가사회 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있

어서 정보화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할 것인가 혹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선택적 발전 전략을 취할 것인가와 같은 정보화정책 추진전략¹¹⁾을 도출하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 균형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정보화분과별 정책평가의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특히 현행의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이러한 정보화분과별 평가가 필요 한 이유는 현행의 정보화정책의 추진체계 및 추진과정을 고려할 때 사업평가보다 한 단계 상위인 분과별 평가를 통해 분과별 정책평가결과를 산출하는 경우 각 분야별 정보화정책에 대한 종합평가가 가능하게 되어 종전의 사업평가결과가 바로 정보화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없었던 오류를 시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보화기획과정과 평가과정간의 연계를 높임으로써 정보화기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화분과별 정책평가를 통해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가 각 개별 부처들의 사업계획들을 종합하여 심의, 조정하고 나아가 정보화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심의 기능이라는 분과위원회 원래의 취지를 살려 종합적으로 분과별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현행의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방법이 단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특성을 가짐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 차원에서 단위사업에 대한 세부평가결과들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거나 종합하고자 할 때에는 단순히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의 총합이 아니라 정책평가적 관점에서의 종합이 필요하다. 즉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정보화정책에 관련되는 여러 관련 부처의 정보화정책을 조정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정보제공으로서의 역할도 정보화분과별 평가를 통한 정책평가에서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1) 이러한 추진 전략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된 시기와 주요 전략을 보면 96년도에 수립된 1차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에서는 정보화추진 시작단계로서 시급한 분야를 선정하여 과급효과가 큰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는 전략이 채택되었고, 99년에 수립된 'Cyber Korea 21'에서는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 채택되었으며, 2002년도에 수립된 'e-Korea Vision 2006'에서는 초고속망의 조기구축 등에 힘입어 새로운 정보화 전략을 모색하는 특징을 보였고, 'U-Korea 기본계획'에서는 우리나라 정보화가 성숙기를 맞아 사회 전 분야로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전략 등이 채택되는 등 중장기계획으로서의 기본계획과 분야별 계획에서는 당시의 국가사회 상황에 따른 특정 전략이 필요하고 이들이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계획수립과정과 평가시행과정간 연계-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기능의 정상화

정보화평가과정이 정보화추진위원회체계를 활용하여 정보화기획과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즉 기획과정에서 각 부처-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정보화추진위원회 체계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과정에 있어서도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업평가를 시행한 후 이에 대해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에서 기관별 사업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분과별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와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¹²⁾

현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는 국정업무 전반에 걸쳐 5대 부문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로 사업별 평가결과를 취합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정부업무평가체제만으로는 정보화체제내에서의 기획과정에서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의 원활한 흐름과 환류기제가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정보화 분과별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업무평가체제와는 별도로 정보화부문에서의 유형별 평가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평기간 조정과 통합을 통한 실효성있는 기획과정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체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이 요청된다.

그리고 분과별 정책평가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만으로 진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분과별 종합평가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분과 평가방법론을 미리 마련하여 분과별 개별 기관들에게 현행의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결과와 함께 분과별 종합평가를 위한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함께 제출하도록 해야 하는 등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각 부처들이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할 때(정보화촉진 기본법 제6조) 이와 관련된 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정보화부문 자체 평가 세부 지침’¹³⁾ 등에서 명백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분과별 평가를 시행할 때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분과위원회차원에서의 조정 및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한국전산원, 2004b: 11) 분과별 종합 진단 과정에서 분과위원회에 일임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행은 전문 평가 기관이나 위원회 등

1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가 정부업무평가체계에 통합되어 실시하는 경우 정보화부문에 대한 통합평가체계는 체제이론에 입각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정보화추진위원회체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시행방안과 논리에 대해서는 정명주(2007)를 참고.

13)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수립하여 각 부처에 송부하고 있음.

의 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차원에서의 정보화사업평가에 있어서 부처들의 자체평가에 대해 평가 총괄관련기관¹⁴⁾에서 확인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확인 점검위원회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확인점검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3. 분과별 계획 수립(혹은 기본계획 체계 재정비)

분과별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평가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기준은 해당 정책에 대한 목표나 수단,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계획에서 도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은 정책내용과 관련된 기준과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기준이 있다(정정길 외, 2004: 265-266). 그러나 여기서 정책평가를 위한 참조틀로서의 정책계획을 논할 때에는 정책내용과 관련된 기준이 관건이다. 정책내용과 관련된 기준은 다시 평가대상을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자, 정책상황으로 구분하여 정책목표에 대해서는 적절성과 충분성,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효과성과 능률성, 정책대상자에 대해서는 공평성과 균형성 그리고 정책상황에 대해서는 일관성과 실현가능성과 같은 각각의 기준들을 들 수 있다(정정길 외, 2004: 267-283).

따라서 이러한 각각의 기준들을 활용하여 정책평가를 하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즉 분과별 평가를 위해서는 분과별 계획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최근 강조되고 있는 성과 관리 차원에서의 분과별 평가가 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를 위한 지원 인프라간의 상호연계의 맥락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¹⁵⁾ 따라서 정보화분과에 대한 성과분석 및 검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과별 성과계획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현체제에서의 10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별로 취합된 분과별 정보화 계획은 이러한 분과별 정책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문제가 있다.

각 개별 부처들은 각 해당기관의 성과관리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적 차원에서 기관계획을 수립하게 되고¹⁶⁾ 그 한 부분으로 정보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14)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는 주요정책, 재정, 인사, 조직, 정보화 각 부문별로 평가총괄 관련기관을 두고 있는데 정보화부문에서는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이에 해당한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1조).

15) 노화준·노유민(2004)은 조직내 성과관리를 위한 지원인프라로 전략기획, 연간성과기획 및 성과계획, 성과관리자료시스템, 성과평가, 활용 등을 들고 이들간의 유기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결과지향적 관리 및 평가가 효율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6)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기관에 대한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

다(이들 정보화사업계획의 총합이 기관차원에서 제출하는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 된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정보화체계에서는 정보화 성과관리목표가 설정되고(정보화 기본계획에서) 그에 따라 사회 각 분야별로 목표가 설정되며(기본계획안에 분야를 설정하여 분야별 목표 및 과제 제시) 개별 사업들은 이러한 전체 정보화 성과관리차원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기관별로 수립된 시행계획과 정보화추진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설정된 국가 정보화 추진 목표간에 부합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절차도 장치도 없다. 다만 기관의 사업 계획을 단순 취합하여 분과별 계획을 형성하게 되고 이는 기본계획과는 무관하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개별사업의 단순취합 형태로서의 현재의 분과별 계획은 분과별 정책평가를 위한 평가기준과 관련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별 정보화사업에 대한 계획이 분과별 정책평가를 위한 충분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할 때 한 가지 방법은 정보화기본계획(현재의 ‘U-Korea 기본계획’)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화기본계획에서의 분야 체계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분과위원회체계에 따른 분과체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기본계획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상세계획을 제시하지는 않고 분야별 중범위 수준에서의 계획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를 기본계획 내에서의 중범위 수준에서의 ‘분야’(5대 분야와 4대 엔진)와 유사사업을 종합한 ‘분과’(10개 분과체계)의 체계가 일치하지 않아 분과별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가 기본계획에서의 분야별 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기본계획에 의거한 분야별 계획도 현행의 정보화분과별 정책평가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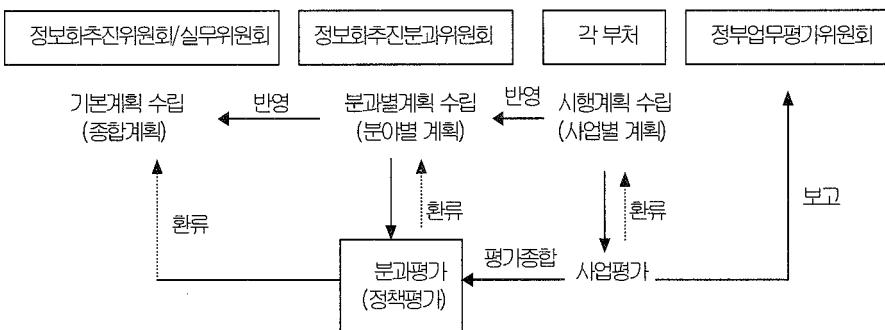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분과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다. 즉 기관별로 수립된 시행계획사업들을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분과별로 정책목표, 정책수단, 정책대상집단, 정책상황¹⁷⁾ 등이 설정된 분과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분과내에서의 상호 조정이나 시스템 상호운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의 기반을 확보하게 되고 이것이 정보화 기본계획에 연계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는 취지에서 각 기관들은 중장기계획으로서의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매년 당해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17) 이는 정정길 외(2004)에서 제시하는 내용적 정책평가기준에 해당되는 요소로서 분과별 평가를 시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과별 계획을 수립한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제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제4장 모형 구상 부분에서 상술하였다.

그러나 분과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나친 행정비용을 초래한다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정보화 기본계획내용의 구성 체계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체계를 재구성하거나 혹은 이와 반대로 향후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분과위원회별 체제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분과별 계획이 기본계획에서 제시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기본계획에서의 분야의 체계와 분과위원회에서의 분과체제가 합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3> 분과별 평가 시행 모형



4. 정보화분과별 정책평가 방법론 개발

정보화분과별 평가는 새로이 정립되는 평가유형으로서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새로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평가방법론 개발은 그 자체로서 심층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요하는 연구 과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과별 정책평가의 시행을 제안하는 차원에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법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제안하고 보다 발전된 형태로의 적용가능한 정밀한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은 노화준(2006)에서 소개하고 있는 평가 종합 이론과 정보화평가위원회에서 2001년, 2002년, 2003년에 걸쳐 정보화사업평가 시행시 적용했던 분야별 평가, 그리고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3)에서 도입한 국가정보화 분야별 진단 방법을 토대로 정보화 분과별 평가에의 적용을 탐색해보자 한다. 방법론은 비계량적 방법과 계량적 방법으로 구분해서 고찰한다.

1) 비계량적 방법

이는 평가결과가 계량적 데이터로 산출되어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기술적(descriptive) 진술의 평가소견의 형태로 산출되어 나오는 방법이다. 비계량적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방법과 그와는 별도의 평가를 시행하는 방법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1) 개별사업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경우

먼저 현재의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노화준(2006)에서 소개하는 평가 종합의 방법을 적용해볼 수 있다.¹⁸⁾ 평가 종합은 특정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기준의 평가결과들을 통합하는 활동이다. 즉 단일의 정책 대상에 대해 다수의 평가결과들에 대한 정보들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리뷰¹⁹⁾하고 분석하고 해석하여 해당 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방법이다. 즉 어느 한 정책의 효과에 대한 다수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그 효과의 방향과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평가 종합의 방법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새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행된 평가결과들을 검토하고 종합하는 데 관한 이론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정보화분과별 정책평가와 같이 기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다수의 평가결과를 활용하면서 평가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한정된 평가자원으로 평가를 시행할 때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보화분과별 정책평가를 제도화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수행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두고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정교한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사업평가결과와 같은 기준의 평가정보들이 있으나 이들이 너무 단편적이고 어느 한 측면에만 치우쳐 있어서 종합성이 결여된 경우, 이를 사업들에 대한 평가결과들을 종합하여 정책기획과정 혹은 평가과정에서 평가정보가 필요한 때에 맞추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화된 정보를 산출해내는 기법으로서의 평가종합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할 것이다.

이에는 개별사업평가가 사례연구로 행해진 경우 그를 종합하는 단일사례 설계 방법, 개별사업평가가 계량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평가결과에 포함된 비계량적 내용들을 종합하는 방법, 개별사업평가결과들에 대해 평가의 신뢰성 등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 이를 자문결과들을 평가 종합에 활용하는 방법, 개별사업평가결과들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방법 등이 있다.

정보화 분과별 평가에 적용하고자 할 때 개별사업평가결과보고서에 포함된 평가항목별(사업계획의 적절성, 성과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성과 달성을, 평가결과의 활용성)로 각 개별 사업별로 기술된 질적 평가결과내용

18) 평가종합 방법에 대해서는 노화준(2006: 433-459))에서 매우 체계적이고 망라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개념 및 기본 논리를 설명하고 정보화정책평가에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19) 체계적 리뷰란 어떤 특정한 주제에 관한 모든 연구들의 모음에서 바이어스를 제한하고 비판적인 평가를 하며, 종합하는 전략들을 적용하는 것을 일컫는다(노화준, 2006: 435).

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기술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개별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표체계를 활용해서 평가하면서 그 결과는 계량적 형태로 (점수화) 산출되어 나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들 개별사업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비계량적 방법으로 평가 종합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평가결과들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이에 포함된 비계량적 평가결과들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시행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종합의 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다수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분석과 해석을 하고 궁극적으로 정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교한 방법론은 계속해서 연구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김명수, 1998: 42).

(2) 새로운 평가를 시행하는 방법: as-is/to-be 평가

정보화정책에 대한 분과별 평가에 응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에 따라 평가들과 평가요소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는데 현황진단이 목적이냐 혹은 향후 추진 방향 및 구체적인 사업도출이 목적이냐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다.

먼저 현황 진단이 목적인 경우의 평가 방법은 정보화정책의 특징 및 개별사업평가항목 등을 고려하여 평가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첫째 해당 분과의 목표 달성을 정도 및 정보화에의 기여 정도, 둘째 분과내 세부사업간 연계 정도, 셋째 해당분야 정보화 추진 관련 추진체계간의 협조와 조정 정도, 넷째 해당분과에 대한 정보화추진 기본계획 및 구상 설계 유무와 그 충실도 다섯째 해당분과 정보화 추진상의 장애요인 및 건의사항 등의 요소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정된 요소에 대해 평가를 시행하는데 이 때 둘째 요소와 셋째 요소 등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즉 현재의 개별 정보화사업평가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평가항목별(사업계획의 적절성, 성과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 내용의 적절성, 성과 달성을, 평가결과의 활용성)로 각 개별 사업별로 기술된 질적 평가결과내용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기술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 요소, 넷째 요소, 다섯째 요소 등에 대해서는 개별사업평가에서 는 종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별도의 평가 자료와 행위 등이 따라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앞서 분과별 평

20) 이러한 방법은 정보화평가위원회에서 2001년, 2002년, 2003년도 정보화사업평가시 시범적으로 적용한 방법을 토대로 소개하고자 한다(정보화평가위원회, 2001, 2002, 2003).

가를 위한 기반조성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분과별 계획이 미리 수립되어 있음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별도의 평가행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향후 방향 및 새로운 과제 도출이 목적인 경우의 평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²¹⁾ 이 때에는 향후 미래상을 전망하고(to-be), 그에 비해 현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as-is), 그 둘간의 갭(gap)을 도출해내어, 미흡한 부분과 그 이유를 제시한 후, 새로이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안하는 방안이다. 이 때 미래상과 현재 수준에 대해 진단할 때 그 구체적인 항목은 각 분과별 정책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데, 예컨대 문화 분과의 경우 문화 생산, 문화 소비, 문화유통 및 교류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법 혹은 문화예술정보화, 문화유산정보화, 문화산업정보화, 도서관정보화, 관광체육정보화 요소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어떤 세부적인 형태의 평가이건 중요한 것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노화준, 2006: 444).

2) 계량적 방법

기존의 정보화평가가 대부분 규범적 분석이거나 질적 분석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술적 통계분석에 머무르는 수준이어서 특정 정보화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윤식, 2000: 122)을 고려할 때 양적 분석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하겠다.

여기서는 두 가지 계량적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메타분석(meta analysis)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이는 개별 평가결과들이 계량적으로 산출되어 나와 효과의 크기가 명시적일 때 이를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종합 결과를 계산해내는 방식이다.²²⁾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화 방법으로서 특정 분과정보화정책에 대한 지수값을 산출하여 시계열 분석이나 분과간 비교 평가 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1) 메타분석(Meta-Analysis)

현재의 정보화사업평가결과가 계량화된 점수로 산출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를 개별사업들에 대한 평가결과 점수에 대한 통계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에 대한 평가결과를 점수로 환산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산출되어 나온 분과

21) 이 방법은 한국전산원(2003)에서 ‘국가정보화 분야 진단 및 평가’의 형태로 시행되었던 평가방법이다. 이때는 새로운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담기 위한 전략 과제 등을 빌글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22) 메타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노화준(2006: 449-459)에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정보화분과별 평가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여 제안하였다.

별 점수로 분과간에 비교 분석하는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의 메타분석은 각각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목적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시행된 평가결과들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방법에서 출발하였는데 이 경우 각기 다른 연구 결과들간의 질적인 차이를 분석과정에서 구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보화 부문에서 이러한 메타분석방법이 유용한 이유는 현행의 정보화평가제도가 모든 중앙행정기관이라는 동질적인 대상에 대해, 동일한 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어 평가결과들간의 동질성을 미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 평가제도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각종 평가관련 연구결과들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그러한 연구결과들은 각기 다른 목적으로 각기 다른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를 결과에 대한 표준화가 어렵고, 기존 연구결과들에 대한 메타평가를 별도로 시행하지 않는 한, 잘못된 평가결과들이 메타분석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위험은 항상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메타분석방법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컨대 표준화된 평균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의 경우(노화준, 2006: 450) 정보화사업의 경우 이미 각 개별사업별로 이미 동일한 척도와 동일한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평가되므로 각 개별사업별로 평가결과의 점수간에 그 크기를 바로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표준화 절차는 필요 없이 특정 분과에 속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현행의 정보화사업 각 평가항목별로(사업계획의 적절성, 성과계획의 적절성, 사업추진내용의 적절성, 성과 달성을, 평가결과의 활용성) 합산하여 평균을 내는 방법으로 통합하는 방법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수화 방법

이 방법은 현재 각 국제기구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제정보화지수 혹은 우리나라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측정, 발표하고 있는 국가정보화지수와 같이 각 분과별로 정보화 수준을 지수화 하여 나타내는 방법이다. 예컨대 교육문화정보화지수, 사회복지정보화지수 등의 형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수화 방법은 예를 들어 교육문화정보화정책 분과내 개별 정보화사업으로 인한 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으로 인한 효과와 지표값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과 비교하면(김명수, 1998: 171), 교육문화정보화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즉 분과별 정책평가를 위한 지표로서는 충분히 활용도가 높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때 어떠한 지표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충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인 바, 지수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목적에 따라 지표체계가

달리 구상될 수 있는데 예컨대 각 분과별 비교 분석이 목적인 경우에는 각 분과별로 동일한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할 것, 가급적 단순한 지표를 활용할 것, 지수산출방법은 분과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요청된다 하겠다.

3) 평가방법별 장단점

위에서 정보화 분과별 평가를 시행하고자 할 때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텁색적 차원에서 그 가능성을 고찰하였는데 각각의 방법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비교 종합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평가방법별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질적 방법	평가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사업평가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시간, 비용 등 평가자원 절감 -정책기획과정에서 평가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적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종합 후 분석 및 해석을 위한 기준과 정책판단기준이 모호 ·주관성이 개입
	as-is,to-be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과제를 도출하고자 할 때 유용 -정보화 기본계획수립과 이에 의거한 시행계획 수립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평가를 시행해야 하므로 이에 따른 평가비용 초래 ·주관성이 개입
양적 방법	메타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과내 개별 세부지표간 비교 가능 ·분과간 비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타분석에 활용하고자 하는 평가 결과들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정보화부문의 경우 현행의 정보화 사업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 제외) ·계량화과정에서 중요한 질적 평가 결과들의 손실 가능성 존재
	지수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의 수준을 간단 명확하게 제시 ·연도별 동일 산식 적용시 시계열별 비교 가능 ·분과간 비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결과의 지나친 단순화로 인해 정책평가결과의 정보량 미흡

정보화 분과별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분과가 다수이고 분과의 성격이나 특성도 모두 상이하므로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일괄적으로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 분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법론도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고 할 때 세부적인 평가기준이나 지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분과간에 동일한 지표 및 기준이 적용되는 측면과, 분과별로 상이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기준이나 지표 등에 대한 구분 등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먼저 질적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 양적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선

택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중에서도 어떤 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따라야 하며, 이러한 방법론이 결정된 후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표 등에 대해 분과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준 및 지표를 적용할 것인지 각각 차별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따라야 할 것이다.

VI 결 론

정보화 추진시기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²³⁾이라는 가치하에 정보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는 ‘초고 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사업’이 시작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추진 조직으로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설치됨과 동시에 주무부처로서의 정보통신부가 발족되던 1990년대 중·후반 무렵부터로 볼 수 있다. 정보화평가제도는 이 무렵인 1997년도에 확립, 시행되었다.

이런 점에서 정보화부문에 대한 평가는 우리나라 정보화 사업이 가장 활성화 되던 시기에 도입된 셈이다. 이는 당시 정보화가 정부 주도적으로 시행되면서 정보화정책의 특성상 고도의 기술집약적 특성을 가지면서 각종 시범사업들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험적으로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 때문으로 볼 수 있다(정명주, 2006: 188).

그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에 따라 정보화부문에서도 종전의 평가제도에 변화가 초래되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평가총괄관련 기관으로서의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가 실무역할을 담당하면서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대해 양적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정책학에서 사업평가와 정책평가에 대한 구분은 분분하나 본 연구에서는, 개별단위사업에 대해 한정된 시간내에 제한된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별단위사업에 대한 개선이 목적인 사업평가는 정보화영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평가와 진단이 어렵고 사업평가와 더불어 영역별 분야별 정책평가가 다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행의 정보화부문 평가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평가는 사업평가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정보

23) 한국전산원(2005)에서는 한국의 정보화정책 발전사를 크게 4개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시기를 ‘국가사회 정보화 촉진’시기로 명명하고 이 기간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1995)되고 제1차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수립되던 시기(1996)부터로 설정하고 있다.

화정책의 추진체계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정보화분과위원회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책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현행의 정보화추진분과체계를 활용한 정보화 분과별 정책평가를 통해 시행할 수 있는 모형을 제안하였다.

정보화분과별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화부문에서의 기획과정과 마찬가지로 평가과정에서도 분과의 원래의 취지를 살려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가 분과별 평가에 대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분과별 진단 및 평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의 활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분과별 평가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기본계획과 시행 계획간의 연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분과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분과별 계획은 별도로 수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정보화 기본계획의 체제를 재검토하여 분과의 체계와 일관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분과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더라도 분과별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재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평가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절차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새로운 평가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방법론 개발은 그 자체로서도 매우 방대하고 정밀한 분석을 요하는 독립된 연구영역이라 보고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탐색적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정보화분과별 평가에 대한 제안은 현행의 정보화추진체계를 고려하고 현행의 정보화 추진과정을 고려한 범위에서 제안하는 제도이다. 연구자가 본문에서 설정한 정책영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사회에는 다양한 정보화 정책영역과 분야가 존재한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으로는 현행의 분과체계를 고려한 분과별 평가뿐만 아니라 분과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정책평가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 평가 혹은 진단의 형태로 정보화추진에 대한 다각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검증과정을 통해 정보화정책추진의 효과와 성과가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양질의 정보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6). 2007년도 교육정보화촉진시행계획(안).
국무조정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2007). 정보화 부문 자체평가 세부지침.

- 김명수.(1998).「공공정책평가론」.서울: 박영사.
- 김성태.(2004).「정보정책론」.서울: 법문사.
- 김순은·윤상오.(2001). 정보화사업 평가기준 도출에 관한 연구-Q방법론을 사용하여-. 「지방정부연구」, 5(4): 207-226.
- 노유진·안문석.(2004). 한국정부에 있어서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영향요인과 활용유형의 특성.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4(3): 227-458.
- 노화준.(2006).「정책평가론」.서울: 법문사.
- 명승환.(2002). 활용을 위한 정책평가의 설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 양재진·정명주·정진우.(2003). 공공정보화사업의 사전평가 모형 구상: 예산과의 연계와 사업 실효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정보화정책」, 10(3): 156-177.
- 오광석.(2005). 국가사회 정보화정책의 현재와 미래. 정보통신정책연구원(편).「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 39-96. 서울: 법영사.
- 유훈.(2006). 정책학습과 정책변동. 「행정논총」, 44(3): 93-119.
- 이윤식.(2000). 정보화 평가방법론의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공공정책연구」, 7: 101-129.
- 이윤식·김영미·김현성·정명주.(2000). 서울시 정보화사업 평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0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장원석·이은정.(2005). 공공분야 정보화사업 성과 측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정명주.(1999). 정보화평가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지방정부학회 1999년도 하계학술대회.
- _____.(2000a). 정보화사업 평가결과활용 분석. 「정보화저널」, 7(2): 57-74..
- _____.(2000b). 21세기 정보화정책 이슈와 평가의 방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0년도 춘계학술대회.
- _____.(2006). 우리나라 정보화평가 제도변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고찰. 「행정논총」, 44(1): 187-218.
- _____.(2007). 통합평가 환경하에서의 정보화평가 추진체계 정립.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7(4): 145-170.
- 정보통신부.(2006).「U-Korea 기본계획」. 서울: 정보통신부.
- 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 2006.10.4., 법률 제8031호).
-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6호).
- 정보화추진위원회.(2006). 정보화추진체계 개편방안(안).
- _____.(2001).「2001년 국가정보화 평가보고서」
- _____.(2002).「2002년 국가정보화 평가보고서」
- _____.(2003).「2003년 국가정보화 평가보고서」

- 정부업무평가기본법.(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시행령.(제정 2006.3.31., 대통령령 제19437호).
- 정정길 외.(2004).「정책평가-이론과 적용」.서울: 법영사.
- 조달청.(2007).「2006년도 정부업무평가 정보화부문 자체평가보고서」. 대전: 조달청
- 한국전산원.(1996a).「알기쉬운 정보기술 HAND BOOK」. 경기: 한국전산원.
- _____.(1996b).「정보사회의 개념정립 및 정보화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 _____.(2003).「국가정보화 분야 진단 및 평가 보고서」.
- _____.(2004a).「국가정보화종합지수 모델개발 연구」.
- _____.(2004b).「정보화정책의 조정기능에 관한 분석과 평가-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CIO Report』, 04-02.
- 한세억.(2000). 정보화정책의 정체성과 진화가능성 고찰.『정보사회연구』, 2: 19-50.
- Braman, Sandra.(1995). Horizons of the state: Information Policy and Power, *Journal of Communication*, 45(4): 4-21.
- Hernon, Peter.(1989). Discussion Forum: National Information Policy,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6(3): 229-236.
- May, Peter.(1992). Policy Learning and Failure. *Journal of Public Policy*, 12(4): 331-354.
- Rossi, Peter H., Mark W., Lipsey and Howard E. Freeman.(2004). *A Systematic Approach* (3rd ed.).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Tim Berners-Lee.(1999). *Weaving the web-The original design and ultimate destiny of the world wide web-*.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 Yochai Benkler.(2000). From Consumers to Users: Shifting the Deeper Structures of Regulation Toward Sustainable Commons and User Access,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52, 561-579.

Abstract

A Sector Evaluation Framework for Information Policy Evaluation

Myung-Ju Chung

Current public information evaluation is limited to program evaluation. The Information Sub-Committee does not function as part of the evaluation process. This study proposes a Framework of Information Policy Evaluation using the Information Sub-Committee. The concept of information sector evaluation needs to be settled for this to happen. The activation of an Information Sub-Committee on the Information Policy Process is proposed. An information sector planning structure also needs to be constructed. In this study, new evaluation implementation is limi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available methods.

【Key words: Information Policy, Information Policy Evaluation, IT Evaluation, Information Policy Sector System】